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대응\*  
- 파라마운트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Measures to the Monopoly and  
Oligopoly in the Hollywood Film Industry  
- Focusing on the Paramount Decree -

송 승 은\*\*  
Song, Seung-Eun

《 목 차 》

- I. 서 설
- II. 파라마운트 판결
- III. 수집통합의 해체와 그 효과
- IV. 수직통합 구조의 재등장
- V. 마무리: 평가와 시사점

┃ 접수일자: 2019년 11월 10일   ┃ 심사일자: 2019년 11월 21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6일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2013380)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국 문 초 록]

오늘날 한국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적 완성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수 대기업 계열사들에 의한 영화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자본의 횡포는 유통질서를 황폐화시키고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옴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켜 중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다. 1920년대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자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배급망을 통해 전국 상영관에 배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 계열사 아닌 독립극장이 부당하게 차별받았으며 독립제작자 역시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1938년 독립계열의 상영관업자들이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을 셔먼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고발하였다. 1940년 ‘동의명령’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정부는 1943년 소송을 재개했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피고 영화사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 및 배급부문과 상영부문의 분리를 요구받고 상영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사법부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을 국내 영화시장에 적극 도입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부 자본을 통해 극장을 ‘사들이고’ 수직통합을 구축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처음부터 투자·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갖춘 후 영화산업을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영법-배급업 겸업의 금지안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영화산업, 수직통합, 스크린 독과점, 영화다양성, 과라마운트 판결.

## I. 서론

2000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2014년 영화 ‘명량’이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새로운 흥행기록을 세운 이후, 2015년에는 영화 ‘암살’과 ‘베테랑’, 2016년 2월에는 영화 ‘김사외전’, 2018년 1월에는 영화 ‘신과 함께’, 2019년 2월에는 영화 ‘극한직업’ 그리고 같은 해 7월 영화 ‘기생충’이 천만관객 영화의 반열에 오르는 등 한국 영화시장의 붐을 증명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영화의 제작 및 배급과 상영의 수직적 결합을 통해 한국 영화시장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씨제이 계열의 경우 영화 제작·배급은 씨제이이엔엠(주)가 상영은 CGV가 하고 있으며, 롯데 계열의 경우 제작·배급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상영은 롯데시네마가 하고 있다.<sup>2)</sup> 최근인 2018년 한국영화 배급부문에서 씨제이이엔엠(주),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주)쇼박스, 그리고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의 4개 배급사가 전체 영화의 45.8%를 차지했고 한국영화시장 점유율은 80.8%에 달했다. 상영부문에서도 전국의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총 3개의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수가 376개로 77.8%의 점유율을 보였고, 극장 스크린 수는 전체 스크린의 92.0%의 점유율에 달하였다.<sup>3)</sup> 또한 2019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의하면

1) ko.wikipedia.org/wiki/천만\_관객\_돌파\_영화 (2019년 11월 5일 방문)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125호, 2015.4.24, pp.7-8 참조.

3)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p.37, p.75.

배급부문의 경우에 위 4개 배급사가 전체 영화의 45.4%를 차지했고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8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렇게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화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고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형성되어 메이저 영화사들이 제작·배급한 영화만을 상영하게 되며, 영화제작자들도 투자-배급-상영이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기업에 투자 받기 쉬운 작품만 기획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독립·예술영화 등 작은 영화시장의 창작역량을 위축시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물론 장기적으로 영화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sup>5)</sup>

이와 관련 미국은 1948년 연방대법원의 소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제작-배급-상영의 수직계열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대형 영화사들은 극장을 매각하고 투자와 배급 중심의 사업 모델을 발달시켜 왔다.<sup>6)</sup>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최근에 막강한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메이저 영화사들의 독과점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sup>7)</sup> 영화산업에 있어서 수직적 통합 및 독과점화는 배급과 상영부문을 왜곡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한국 영화시장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sup>8)</sup>

4) 영화진흥위원회, 2019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pp.17-18.

5) 송승은,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통합 및 독과점화에 대한 공법적 대응”,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p.121.

6)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2157](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2157) (2019년 11월 24일 방문)

7) 2016년 2월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언은 대기업이 상영업과 배급업을 겸업할 수 없고, 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 초과해 상영하지 못하며 저예산 영화를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당시 국회의원 도종환과 안철수의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에서 지난한 논쟁을 불러왔던 영화대기업의 이른바 수직계열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배급·상영 겸영금지)을 최초로 포함하고 있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8) 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상생하는 영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크린 상한제 등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2019.10.14, p.6, p.17 참조.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37&pMenuCD=0302000000](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37&pMenuCD=0302000000)

이에 본고는 미국의 독점금지법(the antitrust law) 및 영화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는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과 파급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영화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파라마운트 판결 개요

### 1. 소송의 경과

1920년대 후반부터 미국영화산업은 8개의 메이저 영화사가<sup>9)</sup>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기 시작한 것이다.<sup>10)</sup> 1930년대가 되면서 이들 메이저 영화사는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동업이나 독자적인 소유를 하기 시작하였고, 특정 극장 체인조직은 오직 그들이 소유한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만을 상영했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를 촬영하고, 작가·감독·프로듀서 및 배우를 계약직 직원으로 두었으며, 필름 현상소를 보유하고, 영사(映寫)필름(print film)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극장을 통해 영화를 배급했다. 즉 영화사들은 사실상의 과점(de facto oligopoly)을 창출하면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sup>11)</sup> 이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배급망을 통해 전국 상영관에 배급하였고,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관행을 활용하여 그들 계열이 아닌 독립극장을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독립제작자는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sup>12)</sup>

---

&pCurrentPage=5&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2019년 11월 5일 방문)

9) Paramount Pictures, Inc., Loews Incorporated, Radio-Keith-Orpheum Radio Pictures, Inc., Warner Bros. Pictures, Inc., 20th Century-Fox Film Corporation, Columbia Pictures Corporation, Universal Corporation, United Artists Corporation의 8개 영화사.

10) 조형근,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현안보고서 제20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12, p.37.

11)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 (2019년 11월1일 방문)

12) 장서희,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소고”, 씨네포럼 제18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4.5, p.164.

1938년 7월 20일 독립계열의 상영관업자들이 이들 8개 메이저 영화사들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고발하였다.<sup>13)</sup> 파라마운트 소송의 근거 법률인 셔먼법은 거래나 통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핵심내용은 거래제한적 공동행위와 독점에 대한 규정(제1조와 제2조)<sup>14)</sup>으로, 파라마운트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위반 여부가 다루어 졌다. 위 영화사들의 독점에 대해 조사한 법무부는 가격담합(price fixing), 일괄상영계약(block-booking), 클리어런스 & 런(clearance & run), 맹목적 상영계약(blind selling) 등과 같은 거래방식이 다른 경쟁자들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또한 수직통합이 셔먼법에 위반되는 독점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sup>15)</sup>

1938년에 제기된 연방정부의 소송은 1940년에 동의명령(a consent decree)<sup>16)</sup>으로 화해했다. 그 내용은 만일 3년 안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동의명령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소송을 재개(再開)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7)</sup> 1940년 11월 20일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승인 하에 1차 동의명령이 발효됐다.<sup>18)</sup> 동의명령의 주요 내용은, 거대 5개의 영화사들(the Big five)<sup>19)</sup>은 장편영화에 덧붙여 단편영화

13) 박제현, 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 평가,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08-4, 공정거래위원회, 2008.12, p.62.

14) 셔먼법은 미국 내 기업결합이 격화되던 19세기 후반 독점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상(commerce)과 거래(trade)를 보호하기 위해 1890년 제정된 미국 최초의 경쟁법이다. 동법 제1조는 “州間の 또는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의 공동 또는 공모는 이를 위법으로 선언”하고, 제2조는 “주간 또는 외국간의 거래나 통상의 어떤 부분을 독점하거나 독점을 기도하거나 또는 독점하기 위하여 결합 또는 공모하는 자는 중죄(felony)로 간주”하고 있다. 장서희, 앞의 글, p.165.

15) 장서희, 앞의 글, p.164.

16) 동의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한 일차적인 위법판단이 전제된 사건에서 피심인과 정부의 동의하에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명령이다. 범위반의 의심이 있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위법으로 주장되는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행위를 중단키로 하고,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을 행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영수,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동의명령 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p.491; Richard A. Epstein, *Antitrust Consent Decrees in Theory and Practice*, The AEI Press, 2007, pp.5-6.

17)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 (2019년 11월 1일 방문); Karig G. Fox, “Paramount Revisited: The Resurge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Hofstra Law Review*, Vol. 21, Issue. 2, 1992, p.512.

18) 장서희, 앞의 글, p.166.

19) Paramount Pictures, Inc., Loews Incorporated, Radio-Keith-Orpheum Radio Pictures, Inc.,

를 일괄계약 할 수 없고 다만 장편영화들은 일괄계약 할 수 있지만 그 수는 5편의 영화로 제한되며, 맹목적 매수(blind buying)는 이제 불법이 되고 영화예매 전에 미국 내 모든 31개의 극장가의 대표 영화관에서 2주마다 특별상영인 시사회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산업계는 동의명령의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3년 후인 1943년에 약속한대로 소송을 재개하였고, 사건은 이제 거대 8개 영화사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1945년 8월 8일 재판에 회부되었다.<sup>20)</sup>

1946년 6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일부 불법적인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독점 또는 독점화 시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즉 가격담합, 개봉-재개봉-처분(Run-Zone-Clearance), 일괄계약 등 불법적인 거래제한에 대하여는 위법임을 인정하였으나<sup>21)</sup>, 배급과 상영부문에서의 독점 또는 독점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sup>22)</sup> 또한 법무부가 요구한 5개 메이저 영화사들이 소유한 극장 전부의 처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sup>23)</sup> 뉴욕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미국 정부(원고)와 피고들 모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서면법위반 사건의 1심에 대한 항소심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이지만,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sup>24)</sup>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곧바로 상소를 심리하게 되었다.<sup>25)</sup>

1948년 5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피고 영화사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서면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 2.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동의명령을 상당부분 지지하면서 7대 1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하였다.<sup>26)</sup> 즉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였고, 다만

Warner Bros. Pictures, Inc., 20th Century-Fox Film Corporation.

20)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2019년 11월1일 방문)

21)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41-142, 147-148, 156-159 (1948).

22)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67-170 (1948).

23)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70 (1948).

24) 중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이 판사들의 동의하에 곧바로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1903년 제정되었다.

25) 장서희, 앞의 글, p.167.

26) 잭슨(Robert H. Jackson) 법관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 법관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Paramount_Pictures,_Inc.)(2019년 11월 1일 방문)

상영에 있어서 메이저 영화사들의 독점 내지 공모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나 극장의 분리 대신 경쟁입찰(competitive bidding)에 의한 영화 상영허가를 선택한 것 등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sup>27)</sup>

### (1) 부당한 공동행위

첫째, 영화를 특정 시간대에 특정 영화관에서 상영하도록 하는 ‘클리어런스 & 런’은 서면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거래 제한이 될 수 있지만, 피고들이 시도한 클리어런스 협정은 거의 대부분 부당한 경쟁제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두 개의 명목상의 경쟁 영화사들이 극장을 공동 소유하여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관리 합의’(pooling agreement)는 경쟁을 독점으로 치환하는 노골적인 노력이고 상상하기 힘든 거래의 명백한 제한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sup>28)</sup>

셋째, 일정 극장 서킷(circuit)<sup>29)</sup>에 영화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상영 허가료를 전국 영화 수익의 특정 비율로 정하는 상영 허가 계약인 ‘정형화 거래’(formular deal), 많은 극장에서의 상영을 포괄하여 허가하는 ‘포괄계약’(master agreement)은 각 극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영화 상영 계약에 응찰할 가능성을 제거하였고, 입찰에 있어서 서킷 전체의 구매력이 통합되는 것은 독점력(monopoly power)의 남용에 해당되어 불법적인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sup>30)</sup>

넷째, 일정 계약기간 동안 한 영화를 다른 영화들과 상영할 것을 조건으로 극장에 배급하는 끼워 팔기(tie-in sales)의 한 형태인 ‘일괄상영계약’ 방식 또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기 있는 영화를 보유한 배급자가 그에 따른 시장지배력(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이용하여 인기 없는 영화를 함께 묶어

27) 경쟁입찰에 대해서 당시 파라마운트 등 5개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법무부도 이러한 방식은 거대 기업의 배만 채우고 결국 작은 독립 상영관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61 (1948); 장서희, 앞의 글, p.168.

28)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49 (1948).

29) 동일인의 통제를 받는 5개관 이상의 극장그룹, 또는 같은 대행사를 통해 영화를 공급받는 5개관 이상의 극장 그룹. 장서희, 앞의 글, p.170.

30)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54 (1948).

팔아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구매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고 또한 인기 있는 영화를 보유하지 못한 군소 배급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므로 결국 영화의 독점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1)</sup>

다섯째, 피고 영화사들이 배급영역에서 수평적으로 ‘가격담합’한 것과 배급사와 상영관 사이에 수직적인 ‘가격담합’을 한 것은 당연 위법(illegal per se)이라고 판시하였다.<sup>32)</sup> 법원은 극장에 대한 상영허가(licenses)를 저작권(copyright) 행사로 보아 특허권 관련 반독점 사건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특허권자가 가격담합으로 전체 산업을 획일화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가격담합은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고 하였다.<sup>33)</sup>

여섯째, 피고 영화사들이 다양한 계약 조항들을 통하여 계열 및 비계열 서킷에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은 독립 영화관에 대하여 ‘차별행위’(discrimination)를 한 것은 서면법상의 거래제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sup>34)</sup>

## (2) 상영에 있어서 독점여부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보유한 극장 수가 미국 전체 극장 수의 17%에 불과하고 피고들에게 ‘독점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배급과 상영부분에서의 독점 또는 독점화 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시장의 획정을 잘못함으로써 상영 시장의 독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단했다. 우선, 독점 여부의 판단은 전국의 모든 극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영 시장의 판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1차 개봉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35)</sup> 1945년경 당시 메이저 영화사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미국 내 극장의 17%(전체 18,076개 중에서 3,137개)를 소유하였는데, 이는 전부 주요 대도시에 소재한 1차 상영관이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화임대수익(film-rental revenue)

31) 이상승,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본 영화산업”, 국내 영화 배급시장 제도개선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6, p.42.

32)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42-143 (1948).

33) 장서희, 앞의 글, pp.168-168.

34)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59-160 (1948).

35) 장서희, 앞의 글, p.171; 정상철/정현일,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2004-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60.

는 미국 내 수익의 45%에 달하는 것이었다.<sup>36)</sup>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 영화사들의 독점 의도나 목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을 경우 그 의도나 목적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쨌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일단 독점력이 구축될 경우 설령 그 힘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면법 제2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도시 소재 1차 개봉관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할 경우 영화사들의 상영 시장 독점이 인정되며 그러한 독점력을 구축한 이상 피고 영화사들의 독점 의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sup>37)</sup>

### (3) 수직통합의 위법성

법무부는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 통합이 ‘당연위법’(illegal per se)이라고 판단하였으나<sup>38)</sup>, 연방대법원은 수직 통합을 통해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그러한 제거의 의도나 목적을 가져야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즉, 수직 통합의 위법성은 수직 통합을 시도한 목적이나 의도, 또는 수직 통합이 가져온 힘과 그에 수반되는 목적이나 의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하여 첫째, 수직 통합이 합법적인 사업 확장이 아닌 시장의 상당부분을 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하에서 계획된 경우에는 서면법에 위배되고<sup>41)</sup>, 둘째, 수직 통합된 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힘과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결부되면 서면법을 위반하는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sup>42)</sup> 따라서 메이저 영화사들이 구축한 수직

36)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41, 167 (1948).

37) 장서희, 앞의 글, p.172.

38)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73-174 (1948).

39) 박중현,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 -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변화와 1992년 동의관결 해제의 의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328; Brian J. Wolf, “The Prohibitions against Studio Ownership of Theaters: Are they an Anachronism?”,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Vol.13, Issue.3, 1993, p.420f.

40) 장서희, 앞의 글, p.172.

41) United States v. Reading Co., 253 U.S. 26, 57; United States v. Lehigh Valley R. Co., 254 U.S. 255, 269-270.

42)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74 (1948).

통합은 정당한 사업 확장을 벗어난 경쟁 제한을 위한 시도로서 경쟁을 배제하는 지배력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제작-배급-상영의 사업군을 분리하고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상 연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배급 부문과 상영부문의 분리를 요구받고 극장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극장을 설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이 상영권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sup>43)</sup>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고 영화사들은 법원의 동의명령에 서명하고 극장소유를 분리함으로써 ‘파라마운트 소송’이 종료된다.

<표1>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영화사들의 회사분할 현황<sup>44)</sup>

구회사	분할회사	영위업종	연도
Paramount	Paramount Pictures Corp	제작·배급	1947
	Paramount Theater	상영	
RKO	RKO Pictures	제작·배급	1950
	RKO Theatres	상영	
21 Century Fox	20th Fox	제작·배급	1951
	National Theatres	상영	
Warner Brothers	Warner Bros. Pictures	제작·배급	1953
	Stanley Warner Corp.	상영	
Loew's	MGM Pictures	제작·배급	1955
	Loew's Theatres	상영	

### Ⅲ. 수직통합의 해체와 그 효과

1948년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에 따른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sup>45)</sup>

첫째, 수직통합 해체 초기에 제작 편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극장의 포기로 인

43)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p.59-60.

44) 박제현, 앞의 글, p.63.

45) 송승은, 앞의 글, pp.127-128 참조.

해 메이저 영화사들은 각 영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흥행에 대한 확신을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블록버스터(blockbuster) 영화의 제작에 집중하게 되었다.<sup>46)</sup> 당시 텔레비전 보급의 일반화로 인한 관객의 감소도 이러한 결과를 증대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메이저 영화사들이 영화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에는 질 높은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sup>47)</sup>

둘째, 제작편수의 감소와 함께 영화의 렌탈료(rental)도 상승하였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고예산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증가와 더 이상 극장소유를 못하게 된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익구조에 대한 재편 요구가 극장이 지불하는 렌탈료를 인상한 것이다.<sup>48)</sup> 이에 따라 심각한 수익의 악화로 폐업하는 극장이 속출하였다.<sup>49)</sup> 또한 영화사들은 영화 개봉 직후 극장으로부터 높은 렌탈료를 징수하고 영화가 장기간 상영될수록 필름대여료를 감해주는 계약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메이저 영화사들은 개봉 초기에 극장 입장수입의 대부분을 챙기는 반면, 극장은 영화가 장기간 흥행에 성공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sup>50)</sup>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극장들은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극장만 소유한 기업들은 과점화되어 있는 메이저 영화사들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수와 합병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갔고, 일부 극장들은 영화상영의 또 다른 창구인 케이블 및 지역방송국의 투자를 통해 메이저 영화사들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꾀하였다.<sup>51)</sup>

셋째, 많은 극장 기업들이 영화선택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크린 수를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 하면서 부대 오락시설을 강화하는 멀티플렉스(multiplex)화를 추진하였다.<sup>52)</sup> 멀티플렉스 극장(복합상영관)은 스크린 수를 늘림

46) 김휴중, “한국 영화산업과 독과점 이슈”, 문화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4.12, p.69.

47) 김휴중, 앞의 글, p.72.

48) 김휴중, 앞의 글, p.70;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66.

49) 장서희, 앞의 글, p.175.

50)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66.

51)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67.

52) 멀티플렉스는 복수의 스크린을 한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여기서 더 한발 나아가 쇼펄물, 놀이공원과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이충직, “한국영화산업과 멀티플렉스의 역할”, 영상예술연구 제20호, 영상예술학회, 2012.5, p.234.

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sup>53)</sup>

넷째, 독립영화의 약진이 나타났다. 수직통합의 해체로 영화제작 시장에 신규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1946년대에 70개였던 독립제작사는 1957년경에는 170개로 늘어났다.<sup>54)</sup> 메이저 영화사들은 독립영화의 배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독립제작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독립제작자로서도 큰 상영관에 상영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독립영화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sup>55)</sup>

이와 같이 수직통합의 해체는 미국 영화시장에서 영화제작 편수의 감소, 과도한 중복상영, 가격상승 등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미국 법무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독립극장주들의 권익마저 보호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면’과 그렇지만 파라마운트 판결이후 미국 영화산업이 보다 자유로운 시장으로 형성되었으며 영화의 질적 수준 또한 상승시켰다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sup>56)</sup>

#### IV. 수직통합 구조의 재등장

파라마운트 판결과 이에 따른 수직통합의 해체에 대하여, 영화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시카고학파’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sup>57)</sup>

시카고학파는 수직통합은 수평합병과 달리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각각 20%씩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자재 공급 업체(영화제작 또는 배급)와 최종품 생산업체(상영)이 수직통합 할 경우 전체 시장에

53)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67.

54) Alexandra Gil, “Breaking the Studios: Antitrust and the Motion Picture Industry”, *NYU Journal of Law & Liberty*, Vol.3, No.1, 2008, p.122.

55) 장서희, 앞의 글, p.177.

56) 김휴중, 앞의 글, p.69; 송승은, 앞의 글, p.128.

57) 장서희, 앞의 글, p.p.177-179; 시카고학파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한다. 즉, 시장 자율성과 작은 정부,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이 시카고학파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서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20%로 통합 전과 변화가 없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20%씩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업체 간의 수직결합은 합병 후 점유율이 40%가 되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반경쟁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sup>58)</sup>

이러한 시카고학파의 이론은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 내에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경쟁정책을 펼쳤으며,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영화 시장에서의 수직통합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경쟁정책도 새롭게 개편되었다.<sup>59)</sup> 그리하여 미국 영화시장에서 배급과 상영의 분리원칙이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파라마운트 소송’의 원고 측인 미 법무부는 메이저 영화사들의 상영시장 재진입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sup>60)</sup> 법무부는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한 후, 동판결의 수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판결을 수정하거나 그 효력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1)</sup> 1985년 법무부는 파라마운트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사들에 대하여 동의판결 내용 중 수직통합 금지 부분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sup>62)</sup>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메이저 영화사가 실질적으로 극장을 소유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sup>63)</sup> 1985년 9월 컬럼비아가 뉴욕의 월터리드(Walter Reade) 극장체인의 지분 58%를 매입하였고, 1986년에는 파라마운트가 만(Mann) 극장 체인을 취득하여 수직통합을 구축하였다.<sup>64)</sup>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발전한 ‘포스트시카고학파’는 수직통합이 반경쟁적이지

58) 윤미경/윤창인/이상승,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정책연구 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2, p.185.

59) Karig G. Fox, *op. cit.*, p.517; 장서희, 앞의 글, p.180.

60) 김휴중, 앞의 글, p.73.

61) Brian J. Wolf, *op. cit.*, p.423; 정상철/정현일, 앞의 글, p.21.

62) 박종현, 앞의 글, p.314; 그러나 법무부는 수직계열화시 경쟁제한요소를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이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합병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① 다른 극장들의 영화개봉이나 동등한 계약조건을 제약하는지, ② 다른 배급사들이 극장개봉에 제약을 받는지, ③ 경쟁사들이 수직통합을 강요받는 상황인지, ④ 이러한 수직통합이 어려운 상황인지, ⑤ 수직통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시장에 대안이 있는지, ⑥ 수직통합을 하여도 이를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이다. Brian J. Wolf, *op. cit.*, p.424; 김수연, “미국극장의 수직계열화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11, p.3.

63) 조형근, 앞의 글, p.38.

64) 박종현, 앞의 글, p.314.

않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위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부문이 모두 완전경쟁적일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일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시장구조가 과점일 때에는 오히려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직통합한 영화사가 비통합(non-integration)의 극장에 영화공급물량을 제한하는 경우<sup>65)</sup>, 시카고학파는 이 경우 비록 자사의 상영관 부문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제작이나 배급 부문에서는 영화공급 중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인 비통합 극장에 영화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포스트시카고학파는 영화 제작시장(또는 배급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영화공급물량이 제한된 자리를 메울 비통합 제작(배급)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비통합 제작(배급)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이 오르지 않으나, 이와 반대로 영화 제작(배급)시장이 과점적이라면 소수의 수직통합한 영화사는 영화공급물량 제한으로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한 점을 이용하여 비통합 배급업체(또는 상영업체)에 공급하는 영화공급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비통합 배급(상영)업체는 손해를 보게 되고, 수직통합한 영화사는 배급 및 상영부문에 있어 경쟁업체인 비통합 배급(상영)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나 최종 소비자의 가격(영화 관람료)이 인상되는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시카고학파의 이론의 영향으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레이건 행정부 시절보다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였으며, 만일 수직통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매각 등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다.<sup>66)</sup>

한편 미국에서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1996년에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을 제정하여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하였

65) 이 경우 비통합 상영관에 경쟁상의 불이익을 끼치고 심지어 시장에서 축출하여 시장을 독점화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반경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서면법 제1조를 '부당하게(unreasonably)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내지 합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서면법 위반이 된다. *Continenta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 49 (1977). 서혜숙/정경환, “수직적 합의 내지 수직적 제한 행위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경쟁저널, 공정경쟁연합회, 2008.5, p.29.

66) 윤미경/윤창인/이상승, 앞의 글, pp.192-193.

다. 그리하여 그동안 한 언론사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과 신문사의 수를 제한하던 규제를 철폐해 거대 미디어 그룹이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들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수직통합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파라마운트 판례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sup>67)</sup>

## V. 시사점 및 결론

영화산업은 여타의 다른 산업과 달리 개봉할 때까지 흥행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만일 제작사와 배급사 또는 상영관이 분리되어 있으면 제작사가 특정 영화의 흥행실패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제작사와 배급사, 상영관이 통합되어 있으면 상영관 입장에서는 ‘대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영화흥행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배급사와 상영관이 함께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통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sup>68)</sup> 이와 같이 영화시장에서 수직통합은 영화제작 자본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대규모 제작 자본을 투입하여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도 한다.<sup>69)</sup>

그러나 몇 개의 기업으로 수직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화시장에서의 독과점이 형성되고, 중소·독립·예술영화 제작사들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제작하더라도 상영의 기회를 얻지 못해 그 영화는 결국 사장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횡포는 새로운 영화창작의 의욕을 저하시켜 영화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물론 중국에는 영화다양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70)</sup> 그러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67) 조형근, 앞의 글, p.38.

68) 윤미경/윤창인/이상승, 앞의 글, p.188.

69) 최영준,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수직 통합과 영화 상영일수 관계”,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1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7.3, pp.82-83.

70) 조형근, 앞의 글, p.7; 최영준, 앞의 글, p.82.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인들은 대기업의 극장과 배급 겸업을 금지한 파라마운트 판결이야말로 현재 스크린 독과점을 비롯한 한국 영화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sup>71)</sup>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파라마운트 판결 직후 미국영화 시장은 제작편수 감소와 영화관람료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기를 맞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영화사의 극장 소유가 다시 증가하고, 1996년 통신법의 제정 이후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수직통합이 허용돼 사실상 파라마운트 판결은 사문화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2)</sup>

그러나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0년대 상황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로서 유효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수직통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파라마운트 판결에서 법적 하자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경쟁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sup>73)</sup> 연방대법원은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에도 수직통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 영화사들이 시도한 수직통합이 피고들의 독점 수단으로 기능하였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파라마운트 판결의 근본취지(根本趣旨)는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직통합이 독점 수단이 되는 것을 금지시킨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금도 유효하다고<sup>74)</sup> 보아야 한다.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사법부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을 국내 영화시장에 적극 도입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규율에 대해 ‘폐해규제주의’를 취하여 독과점 그 자체

71) <http://star.mt.co.kr/stview.php?no=2014092209171437042> (2019년 11월 23일 방문)

72)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4092209171437042&type=1&outlink=1> (2019년 11월 5일 방문)

73) 그러므로 지금 미국에서 수직통합이 얼마나 허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경쟁상황이 미국의 1940년대와 비슷한지 미국의 현재 상황과 비슷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박경신, “할리우드 독과점 극복을 위한 사례 분석”, 한국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 2014.9, p.37.

74) 장서희, 앞의 글, p.185.

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새로운 대응법제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sup>75)</sup>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의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부 금융자본을 통해 극장을 ‘사들이고’ 수직통합을 구축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처음부터 투자·제작 → 배급 →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갖춘 후 영화산업을 독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스크린)독과점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①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을 제한하는 ‘상영제한제’와 ② 상영법-배급법 겸업의 금지<sup>76)</sup> 중 후자에<sup>77)</sup> 대해서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78)</sup>

---

75) 독과점을 규율하는 입법주의에는 크게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가 있다. 전자는 독과점의 형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미국, 일본 등), 후자는 독과점의 형성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남용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다(한국, 독일, 영국 등). 그러나 양자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인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 등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폐해규제주의를 택하면서도 기업결합의 규제 등을 통하여 독과점을 형성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제4판), 법문사, 2015, p.20; 박은재, 공정거래와 형사법, 박영사, 2014, p.91.

76) 2016년 10월 당시 국회의원 도종환과 안철수가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3081, 3083)’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77)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영화발전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과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상영법과 배급법 겸업 금지를 주장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60800005> (2019년 11월 8일 방문)

78)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송승은,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성균관법학 제30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9, pp.303-304.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제4판), 법문사, 2015.
- 박은재, 공정거래와 형사법, 박영사, 2014.
- 영화진흥위원회, 2019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 김수연, “미국극장의 수직계열화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11, pp.1-7.
- 김휴종, “한국 영화산업과 독과점 이슈”, 문화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4.12. pp.63-84.
- 박경신, “할리우드 독과점 극복을 위한 사례 분석”, 한국영화산업 공정한경 조성  
을 위한 세미나 자료, 2014.9. pp.31-41.
- 박제현, 『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 평가』,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  
리즈 2008-4, 공정거래위원회, 2008.12. pp.1-78.
- 박중현,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 - 파라마운트 판결 이  
후의 변화와 1992년 동의판결 해제의 의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  
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p.301-334.
- 박현준, “법제도와 다양성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이  
론실무학회, 2017.4, pp.237-260.
- 송승은,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통합 및 독과점화에 대한 공법적 대응”,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pp.119-147.
- \_\_\_\_\_,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성균관법학 제30  
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9. pp.287-312.
- 서혜숙 · 정경환, “수직적 합의 내지 수직적 제한 행위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경  
쟁저널, 공정경쟁연합회, 2008.5. pp.28-39.
- 신영수,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동의명령 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pp.489-515.
- 윤미경 · 윤창인 · 이상승,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정책연구  
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2. pp.23-198.

- 이상승,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본 영화산업”, 국내 영화 배급시장 제도개선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6. pp.34-66.
- 이충직, “한국영화산업과 멀티플렉스의 역할”, 영상예술연구 제20호, 영상예술학회, 2012.5. pp.231-258.
- 장서희,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소고”, 씨네포럼 제18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4.5. pp.161-196.
- 정상철·정현일,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 2004-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p.1-91.
- 조형근,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현안보고서 제20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12. pp.1-57.
- 최영준,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수직 통합과 영화 상영일수 관계”,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1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7.3. pp.73-89.

<외국문헌>

- Alexandra Gil, “Breaking the Studios: Antitrust and the Motion Picture Industry”, NYU Journal of Law & Liberty, Vol.3, No.1, 2008, pp.83-123.
- Brian J. Wolf, “The Prohibitions against Studio Ownership of Theaters: Are they an Anachronism?”,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Vol.13, Issue.3, 1993, pp.413-435.
- Karig G. Fox, “Paramount Revisited: The Resurge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Hofstra Law Review, Vol. 21, Issue. 2, 1992, pp.505-536.
- Richard A. Epstein, Antitrust Consent Decrees in Theory and Practice, The AEI Press, 2007.

<인터넷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fic.or.kr>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Measures to the Monopoly and  
Oligopoly in the Hollywood Film Industry**  
- Focusing on the Paramount Decree -

**Song, Seung-Eun\***

In the early 2000s, Korean multiplex chains,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were vertically combined, from investment/production to distribution/screening. They have dominated Korean film industry until today. These vertically combined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ofits with extreme wide release. We call this current situation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It is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this industry.

On May 1948, the U. S. Federal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Paramount dependents who were Hollywood studios violated Sherman Act by vertical integration, blocking booking and so on. The court also ordered the Paramount dependents to prohibit from their activities unreasonably restraining competition, and to divest five major studios of theaters. Under the Paramount decision, Hollywood studio system was weakened and studios decreased film production and concentrated on distribution instead in the decline of a motion picture industry.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is imbalanced market to make it fair. The solution, such as the Paramount decree,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film market to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to create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It is time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diversity in film industry and enact an influential

---

\*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of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in Law

legal policy to actually limit the monopolies of film distribution and multiplex screening business. This will help the audience enjoy various movies and prevent film industry disruption.

**Key Words**

Film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Diversity in Film Industry, Paramount Decree.